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97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안 일 : 2018년 10월 15일
- 회 부 일 : 2018년 10월 29일

2. 제안이유

- 인터넷 사용 환경 변화로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기반의 시정 참여가 축소되는 현실에 맞추어 회원 마일리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일리지 부여 기준 및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시 홈페이지의 마일리지의 사용용도 정비(안 제8조제1항)

- (1) 사용빈도가 감소하는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삭제
- (2) 시장이 정할 수 있는 마일리지 용도의 범위를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에서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 등의 교환 등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확대

나.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정한 조례의 별표를 삭제하면서 시장이 그
부여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띄어쓰기 오류 및 비문 표현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18. 8. 2. ~ 8. 22)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정의 취지 및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마일리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일리지 사용 용도를 명시한 사용 규정(안제8조 제1항)을 변경하고, 마일리지 적립서비스 부여 기준을 삭제(안 제8조 제3항 및 별표)하려는 것임.

※ ‘마일리지(Mileage) 제도’ 또는 ‘포인트 적립 서비스’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실적에 비례하여 일정률의 보너스점수를 주고, 누적된 점수가 일정 수준이 되면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서비스로 고객 충성도(Loyalty: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이탈하지 않고 적극적인 지지를 가진 상태)를 제고하는 유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IT 기술발달에 따라 일반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등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 본 조례는 2007년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으나, 인터넷 기반 환경변화에 따라 현재까지 제도의 효과성검증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본 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 회원기반의 마일리지 적립서비스 및 적립금액이 축소되고, 단순 로그인, 일회성 가입 등 일부 적립서비스의 경우 시정참여와 시정홍보 등의 효과가 미흡한 바, 마일리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홈페이지 마일리지 보유현황

- 전체회원 대비 1천 미만(97.2%), 1천이상~5천 미만(2.4%), 5천 이상~1만 미만(0.3%), 1만 이상(0.1%) 순

점 수	1만 이상	5천 이상 1만 미만	1천 이상 5천 미만	1천 미만	합 계
회원수(명)	655	1,316	11,073	448,140	461,184
비 율	0.1%	0.3%	2.4%	97.2%	100%

1.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 2.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3. 도서문화상품권 지급 4.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	1.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 2.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으로의 교환 등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것 <삭 제> <삭 제>
--	---

○ 본 개정조례안은 SNS채널의 다양화 등 인터넷 사용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남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현 실정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홈페이지상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59개 기관중 5곳이 운영중에 있음.

구분	합계	마일리지 운영	마일리지미운영	비고
총계	59	5	54	
중앙 기관	18	-	18	
광역 시도	16	3	13	
		인천시		예산 : 150만원(T-머니, 기부 사용)
		부산시		예산 : 300만원(상품권, 문자, 기부 사용)
		강원도		예산 : 없음(자체 문자서비스 활용)
자치구	25	2	23	
		광진구		예산 : 없음(자체 문자서비스 활용)
		마포구		예산 : 없음(자체 문자서비스 활용)

○ 다만, 현재 휴대전자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가 사용(2017년 기준 1,318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 제8조 제1항 제2호의 삭제가 적정한지와 함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 홈페이지 마일리지 사용현황

- 총 11,130건으로 기부(4,756건), T머니 충전(2,860건), 도서문화상품권 (2,136건), 문자전송(1,318건), 전통시장 상품권(60건) 순

연번	종류		사용점수	사용방법	2017년 사용		
					건수	금액(천원)	비율
1	도서문화상품권	온라인	5천점 이상	온라인 상품권 충전	2,136	14,670	0.44%
		종이	2만점 이상	등기발송			
2	전통시장상품권		2만점 이상	등기발송	60	1,200	0.01%
3	T-머니		1천점 이상	T-머니 충전	2,860	6,257	0.59%
4	문자전송		1건당 20점	마일리지 차감	1,318	32	0.27%
5	기부		100점 이상	기부금액 적립	4,756	4,859	0.98%
합계					11,130	27,018	2.29%

다. 마일리지 사용 용도 제한 변경(안 제8조 제3항 및 별표)

- 안 제8조제3항은 회원가입, 로그인, 글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 등으로 세분화된 마일리지 대상, 부여점수, 부여방법이 포함된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규정한 조례 별표를 삭제하면서 시장이 그 부여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변경 하는 것임.
- 개정안은 별표에서 규정한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삭제·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여기준을 조례로 규범화한 것을 시장으로 하여금 인터넷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마일리지 운영의 행정편의성만을 위해서 규범화된 별표를 삭제 함에 따라, 당초 마일리지 제도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별표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와 함께 집행부의 자의적 운영의 적정성과 잦은 변경에 따른 혼란의 요소는 없는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조례로 정한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p> <p>①~② (생 략)</p> <p>③ <u>마일리지는 별표에 따르되, 시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u></p> <p><u>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u></p> <p>[별표] 마일리지 부여기준 (제8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대 상</th> <th>부여 점수</th> <th>부여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1. 회원 가입</td> <td>홈페이지 회원 신규가입자</td> <td>500점</td> <td>최초가입시 1회</td> </tr> <tr> <td>2. 로그인</td> <td>홈페이지 방문자</td> <td>10점</td> <td>1일 1회</td> </tr> <tr> <td>3. 글·사진 및 동영상 게시</td> <td>글·사진·동영상을 게시한 자(게시물은 직접 시정참여와 관련된 것으로 시장이 인정 하는 것)</td> <td>100점 이상 3000점 이하</td> <td>게시물별로 각각 승인처리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해당 게시물 운영 홈페이지에서 1인 1일당 1건의 게시물에 한정하여 점수를 부여한다</td> </tr> </tbody> </table> <p>주: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p>	구 분	대 상	부여 점수	부여 방법	1. 회원 가입	홈페이지 회원 신규가입자	500점	최초가입시 1회	2. 로그인	홈페이지 방문자	10점	1일 1회	3. 글·사진 및 동영상 게시	글·사진·동영상을 게시한 자(게시물은 직접 시정참여와 관련된 것으로 시장이 인정 하는 것)	100점 이상 3000점 이하	게시물별로 각각 승인처리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해당 게시물 운영 홈페이지에서 1인 1일당 1건의 게시물에 한정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p>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p> <p>①~② (생 략)</p> <p>③ <u>시장은 마일리지 부여기준, -----</u> -----.</p> <p><u>별표를 삭제 한다.</u></p> <p>〈삭제〉</p>
구 분	대 상	부여 점수	부여 방법														
1. 회원 가입	홈페이지 회원 신규가입자	500점	최초가입시 1회														
2. 로그인	홈페이지 방문자	10점	1일 1회														
3. 글·사진 및 동영상 게시	글·사진·동영상을 게시한 자(게시물은 직접 시정참여와 관련된 것으로 시장이 인정 하는 것)	100점 이상 3000점 이하	게시물별로 각각 승인처리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해당 게시물 운영 홈페이지에서 1인 1일당 1건의 게시물에 한정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전문위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김 정 덕
------	-------	-------	-------